|  |  |  |
| --- | --- | --- |
|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공업및정보화부령 제5호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이 2015년 8월 20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공업및정보화부의 동의를 득하여 공표하는 바이며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장 차이푸차오(蔡赴朝)  공업및정보화부 부장 먀오위(苗圩)  2016년 2월 4일  제1장 총칙  제1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질서를 규율하고 인터넷 출판 서비스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판관리조례>,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 및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황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출판 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중에게 인터넷 출판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출판물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중에게 제공되는 편집, 제작, 가공 등 출판 특징을 갖춘 디지털화 작품을 지칭하며 그 주요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다.  (1) 문학, 예술, 과학 등 분야의 지식성•사상성이 있는 문자, 그림, 지도, 게임, 애니메이션, 음성물•영상물 등 창작적 디지털화 작품;  (2) 기(旣) 출판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향물, 전자출판물 등과 내용이 일치한 디지털화 작품;  (3) 상기 작품에 대한 선택, 편성, 취합 등 방식을 통하여 형성된 인터넷 문헌 데이터베이스 등 디지털화 작품;  (4)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인정하는 기타 유형의 디지털화 작품.  인터넷 출판 서비스의 구체적인 업무 분류는 별도로 제정한다.  제3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함에 있어 헌법과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방향을 고수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을 견지하여야 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여야 하며 민족 소질 제고, 경제 발전 촉진, 사회 진보 촉진에 유리한 모든 사상도덕, 과학기술 및 문화지식을 전파하고 축적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인민대중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제4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인터넷 출판 서비스의 업계 주관부서로서 전국의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대한 전치(前置) 심사비준과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공업및정보화부는 인터넷 업계 주관부서로서 그 직책에 의거하여 전국의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대하여 상응하는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지방 인민정부의 각 급 출판행정주관부서와 성(省)급 통신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의 인터넷 출판 서비스 및 접속 서비스에 대하여 상응하는 감독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업무 협력을 강화한다.  제5조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이미 취득한 불법 혐의 증거 또는 제보에 근거하여 불법으로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처리 시 불법 혐의 행위와 연관된 물품 및 경영장소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와 연관된 물품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국가는 도서, 음향물, 전자, 신문, 정기간행물 출판업체가 인터넷 출판 서비스를 통하여 뉴미디어와의 융합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격려한다.  국가는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계협회를 설립하여 정관에 따라 출판행정주관부서의 지도하에 업계 자율적 규범을 제정하고 인터넷 문명을 선도하며 건강 및 유익한 내용을 전파하고 불건전 및 해로운 내용을 견제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2장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  제7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출판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8조 도서, 음향, 전자, 신문, 정기간행물 출판업체가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필요한 확정된 웹사이트 도메인 네임, 스마트 단말기 응용 프로그램 등 출판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확정된 인터넷 출판 서비스 범위가 있어야 한다.  (3)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서버 및 저장설비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업체가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에 규정한 조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하는 주체의 확정되고 기타 출판업체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명칭 및 정관이 있어야 한다.  (2) 국가의 규정에 부합되는 법정대표인 및 주요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법정대표인은 반드시 국내에서 장기 거주하는 완전행위능력을 가진 중국 공민이어야 하며 법정대표인 및 주요책임자 중 최소한 1명이 중급 이상 출판전문기술인력 직업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 법정대표인 및 주요책임자 이외에 인터넷 출판 서비스 범위와 어울리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인정하는 출판 및 관련 전문분야 기술직업자격을 보유한 전문직 편집출판 인력을 8명 이상 보유고 있어야 하며 그 중 최소 3명 이상이 중급 이상 직업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필요한 내용심사감수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5) 고정 업무장소가 있어야 한다.  (6) 법률•행정법규 및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규정한 기타 조건.  제10조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및 외자경영의 업체는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국내의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경영기업 또는 경외의 조직 및 개인과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무에 관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 신청은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한 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을 비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 신청표>;  (2) 업체의 정관 및 자본금 출처•성격 증명서류;  (3) 자금 사용, 제품 기획, 기술조건, 설비 보유 상황, 기구 설치, 인력 상황, 시장분석, 리스크 평가, 판권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인터넷 출판 서비스 사업 타당성 연구 보고서;  (4) 법정대표인 및 주요책임자의 이력서, 주소지, 신분증명서류;  (5) 편집•출판 등 관련 전문분야 기술인력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직업자격증명, 주요 종업경력 및 교육훈련증명;  (6) 업무장소 사용증명;  (7) 웹사이트 도메인 네임 등록 증명, 관련 서버를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설치하겠다는 확약서.  이 규정 제8조에 열거한 업체가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전 항의 (1)호, (6)호, (7)호에 규정한 서류만 제출한다.  제13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를 설립하는 신청인은 비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록등기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비준문건을 지참하여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에서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 등기표>를 수령 및 작성한다.  (2)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심사를 통하여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 등기표>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10일 내에 신청인에게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한다.  (3)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 등기표>는 3부를 작성하여 신청인 및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가 15일 내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 및 비안(備案)한다.  제14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은 5년 유효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인터넷 출판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이전에 이 규정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판행정주관부서는 당해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 연장에 대한 비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준하는 경우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을 교체발급한다.  제15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비준을 득한 후 신청인은 비준문서,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을 지참하여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통신주관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의 허가등기사항, 자본구조를 변경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하거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비준문서를 지참하여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통신주관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인터넷 출판 서비스를 중지(中止)하는 경우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에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고 그 이유와 중지(中止) 기한을 설명하여야 한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의 인터넷 출판 서비스 중지(中止) 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인터넷 출판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에서 말소 수속을 이행한 후 성•자치구•직할시 통신주관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는 관련 정보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 및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제18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등기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될 때까지 인터넷 출판 서비스를 취급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 등기 수속을 처리한 출판행정주관부서가 등기를 말소하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 및 비안(備案)한다. 이와 동시에 관련 성•자치구•직할시 통신주관부서에 통보한다.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는 기존 등기 수속을 처리한 출판행정주관부서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는 그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출판행정주관부서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의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인터넷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검색 순위에 대한 인공적 개입, 광고, 홍보 등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대상의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 및 그 업무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는 비준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하사여야 하여야 하며 비준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는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을 대여, 임대, 매매하거나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자사의 명의로 인터넷 출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용하는 행위는 전 항에 규정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제22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는 특수관리지분제도를 시행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3장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  제23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는 편집책임제도를 시행하여 인터넷 출판물 내용의 합법성을 보장한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는 출판물내용심사책임제도, 책임편집제도, 책임감수제도 등 관리제도를 시행하여 인터넷 출판물의 출판 품질을 보장한다.  인터넷상으로 기타 출판업체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출판한 작품을 출판하고 기존 출판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터넷 출판물의 해당 페이지에 원(原) 출판업체의 명칭 및 도서 고유번호, 간행물 고유번호, 인터넷 출판물 고유번호 또는 웹사이트 주소 정보를 현저히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인터넷 출판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에 저촉되는 내용;  (2) 국가의 통일, 주권 및 영토의 완전성을 파괴하는 내용;  (3) 국가비밀을 누설하거나 국가안전을 파괴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해하는 내용;  (4) 민족간의 원한 또는 민족 차별을 선동하거나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의 풍습•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5) 사교(邪敎), 미신(迷信)을 홍보하는 내용;  (6) 요언을 전파하거나 사회질서를 교란시키거나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색정, 도박, 폭력을 홍보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8) 타인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사회 공중도덕 또는 민족의 우수 문화전통을 파괴하는 내용;  (10) 법률•행정법규 및 국가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25조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 출판물은 사회 공중도덕 위반행위 및 불법•범죄행위에 대한 미성년자의 모방을 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되고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해로운 공포, 잔폭 등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미성년자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출판하고자 하는 인터넷 출판물이 국가의 안전, 사회의 안정 등 중대 과제 내용과 연관된 경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중대 과제 비안(備案)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중대 과제 내용은 출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인터넷 게임의 경우 인터넷 출판에 앞서 반드시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에 신청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한 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인터넷 출판물의 내용이 진실적이 못하거나 공정성 미흡으로 인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 관련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는 권리침해를 중단하여야 하고 공개적으로 정정하여야 하며 영향을 제거하여야 하고 법에 따라 기타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9조 국가는 인터넷 출판물에 대하여 표지 관리를 시행한다. 상세한 방법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30조 인터넷 출판물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 및 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출판물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인터넷 출판물에 사용되는 언어•문자는 반드시 국가의 법률규정 및 관련 표준•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1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는 국가의 관련 규정 또는 기술표준에 따라 필요한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응용하여야 하고 각 항 관리제도를 구축 및 완비하여야 하며 정보의 안전성, 내용의 합법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출판행정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는데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인터넷상으로 해외 출판물을 제공하는 경우 합법적인 저작권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해외 저작권자의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아 인터넷 게임을 출판하는 경우 반드시 이 규정 제27조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3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는 그가 출판한 인터넷 출판물이 이 규정 제24조, 제25조에 열거한 내용이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소재지 현급 이상 출판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는 그가 출판한 작품의 내용 및 시간, 웹사이트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은 60일간 보관하여야 하고 국가 관련부서가 법에 따라 조회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는 반드시 국가의 통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출판행정주관부서에 통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36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는 속지(屬地)주의 관리 원칙을 시행한다.  각 지의 출판행정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 및 그 출판 활동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책을 이행한다.  (1)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에 대한 업계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의 이 규정에 대한 위반 상황을 조사•처리하고 상급 출판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한다.  (2)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처리하고 상급 출판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한다.  (3) 인터넷 출판물의 내용 및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내용 심사 및 품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급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한다.  (4) 인터넷 출판업 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며 직업 교육훈련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5) 상급 출판행정주관부서의 업무에 협조하고 관련 부서간의 업무관계를 조율하며 하급 출판행정주관부서의 업무를 지도한다.  제37조 출판행정주관부서는 감독관리인력 육성 및 기구 건설을 강화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술 수단을 취하여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는 출판행정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검사 등 법 집행 직책을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해당 행정구역 내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 상황에 관한 서면보고서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는 연도검사제도를 시행하며 연도검사는 연 1회 실시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에 대한 연도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상황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 및 비안(備案)한다. 연도검사의 내용은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의 설립조건, 등기항목, 출판경영 상황, 출판품질, 법률규범 준수 상황, 내부관리 상황 등을 포함한다.  제39조 연도검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는 해당 연도의 정책•법률 집행 상황, 포상•징계 상황, 인터넷 출판•관리•운영실적 상황, 인터넷 출판물 목록, 연도검사 대상기간 내의 위법•범칙행위 시정 상황, 편집•출판인력 교육훈련 상황 등 내용을 포함한 연도자기검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통일적으로 인쇄제작한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연도검사 등기표>를 작성하여 연도자기검사보고사와 같이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한다.  (2)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의 설립조건, 등기항목, 업무 상황 및 법규 집행 상황 등에 대한 전면적 심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의 연도자기검사보고서 및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연도검사 등기표> 등 연도검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전면 심사•검사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연도검사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등기 처리하고 그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에 연도검사 도장을 날인한다.  (3)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전면 심사•검사 업무를 완료한 후 15일 내에 연도검사 상황 및 관련 서면자료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제4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연도검사를 일시 연기한다.  (1) 휴업정돈 중에 있는 경우;  (2) 출판 관련 법규•규범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요구에 따라 출판행정주관부서의 관련 관리 규정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내부관리가 혼란스럽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인 인터넷 출판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지 아니한 경우;  (5)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법 위반 혐의가 있어 진일보의 확인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도검사 일시 연기 기간은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가 확정하여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비안(備案)하며 18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연도검사 일시 연기 기간 중에 반드시 인터넷 출판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한다.  일시 연기 기간이 만료된 후 이 규정에 따라 연도검사 수속을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41조 이 규정 제8조, 제9조에 규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연도검사를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을 취소하며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가 등기를 말소하고 현지 통신주관부서에 통보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42조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의 연도검사 사항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 상황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 및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제43조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연도검사 결과를 사회에 공표할 수 있다.  제44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하는 편집•출판 등 관련 전문기술인력 및 그 책임자는 국가의 편집•출판 등 관련 전문기술인력 직업자격 관리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행정주관부서가 추진하는 직업 교육훈련에 참가하여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통일적으로 인쇄제작한 <직업 교육훈련 합격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직업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육훈련 후 <직업 교육훈련 합격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 직무를 계속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장 및 장려  제45조 국가는 인터넷 출판 서비스업의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제정한다. 과학과 진리를 홍보하고 선진 문화를 전파하며 과학적 정신을 제창하고 올바른 영혼을 키우며 사회주의 기풍을 발양하는 등 선진 인터넷 문화의 형성에 유리한 인터넷 출판 서비스를 격려하고 건강한 문화, 우수한 문화상품의 디지털화, 인터넷화 및 전파를 격려한다.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법에 따라 종사하는 인터넷 출판 서비스를 간섭, 방해하거나 파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우수•중점 인터넷 출판물의 출판을 지원 및 격려한다.  (1)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의 서술 및 전파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출판물;  (2)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홍보, 애국주의•집단주의•사회주의와 민족단결 교육 및 사회공중도덕•직업도덕•가정미덕•개인품성의 홍보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출판물;  (3) 우수한 민족 문화의 홍보, 국제 문화교류 촉진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출판물;  (4)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였거나 우수한 문화적 의미가 있는 출판물;  (5) 문화 혁신의 촉진, 국내외 최신 문화성과의 신속한 반영에 중대한 기여를 한 출판물;  (6) 공공문화 서비스 촉진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출판물;  (7)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건강한 출판물 또는 미성년자의 건강성장에 유리한 기타 출판물;  (8) 중요한 사상적 가치, 과학적 가치 또는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기타 출판물.  제47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업의 발전과 번영에 중요한 기여를 한 업체와 개인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려한다.  제48조 국가는 인터넷 출판물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정보망 전파권 보호조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등 저작권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9조 인터넷 출판물의 출판을 간섭, 방해 또는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출판행정주관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는 적시에 조치를 취하고 단속하여야 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50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출판행정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고장 하달;  (2) 통보 방식의 지적, 시정 명령;  (3) 공개적 반성 명령;  (4) 불법내용 삭제 명령.  경고장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통일된 양식을 제정하고 출판행정주관부서가 관련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에 하달한다.  본 조에 열거한 행정조치는 병용이 가능하다.  제51조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하거나 인터넷상으로 인터넷 게임(해외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은 인터넷 게임 포함)을 무단 출판하는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1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판행정주관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정(法定) 직권에 따라 단속하고 소재지 성(省)급 통신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의 통보에 의거하여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웹사이트 폐쇄 등 처벌을 내린다. 형법에 저촉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 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인터넷 출판물을 일절 삭제하고 불법소득 및 불법 출판활동에 사용된 주요 설비, 전용 도구를 몰수하며 경영액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불법 경영액이 1만위안 이하인 경우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제52조 이 규정 제24조, 제25조에 규정한 금지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출판물을 출판, 전파하는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2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판행정주관부서가 관련 내용 삭제 및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경영액이 1만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경영액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하며 불법 경영액이 1만위안 이하인 경우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기한부 휴업정돈을 명하거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을 취소하고 통신주관부서가 출판행정주관부서의 통보에 의거하여 통신업무 경영허가증을 취소하거나 웹사이트 폐쇄를 명한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조 제1항의 행위에 종사하는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인공적 개입, 광고, 홍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출판행정주관부서가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도록 명한다.  제53조 이 규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판행정주관부서가 불법행위 중단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불법 경영액이 1만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경영액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하며 불법 경영액이 1만위안 이하인 경우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기한부 휴업정돈을 명하거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판행정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준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기한부 휴업정돈을 명하거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을 취소한다.  (1)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의 등기사항, 자본구조를 변경하거나 비준받은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하거나 지사를 설립함에 있어 이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중대 과제와 연관된 출판물을 출판함에 있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인터넷 출판 서비스를 180일 이상 무단 중지한 경우;  (4) 인터넷 출판물의 품질이 관련 규정 및 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55조 이 규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 제2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성급 통신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위가 심각한 경우 휴업정돈 또는 웹사이트 일시 폐쇄를 명한다.  제56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법에 따라 출판행정주관부서에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문출판 통계 관리방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57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이 규정 제2장의 규정을 어기고 사기 또는 뇌물공여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해당 허가를 취소한다.  제5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출판행정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1) 이 규정 제10조의 규정을 어기고 경내외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경영기업과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련 업무협력을 추진한 경우;  (2) 이 규정 제19조의 규정을 어기고 관련 허가정보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웹사이트의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규정 제23조의 규정을 어기고 규정에 따라 편집책임제도 등 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규정 제31조의 규정을 어기고 규정 또는 표준에 따라 관련 시스템, 설비를 보유•응용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 관리제도를 완비하지 아니한 경우;  (5) 이 규정의 요구에 따라 연도검사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6) 이 규정 제44조의 규정을 어기고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담당자가 <직업교육훈련 합격증서>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7) 인터넷 출판에 관한 출판행정주관부서의 기타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9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허가증 취소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그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는 허가증을 취소당한 날로부터 10년간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터넷 출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출판•편집 등 관련 전문기술인력 및 그 책임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고 그 경위가 심각한 경우 원(原) 자격증서 발급기관이 그 자격증서를 취소한다.  제7장 부칙  제60조 이 규정에서 언급한 출판물내용심사책임제도, 책임편집제도, 책임감수제도 등 관리제도는 <도서품질 보장 시스템>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61조 이 규정은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원(原) 국가신문출판총서•정보산업부가 2002년 6월 27일 공표한 <인터넷 출판 관리 잠정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  | **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工业和信息化部令第5号  《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已经2015年8月20日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局务会议通过，并经工业和信息化部同意，现予公布，自2016年3月10日起施行。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局长 蔡赴朝  工业和信息化部 部长 苗圩  2016年2月4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网络出版服务秩序，促进网络出版服务业健康有序发展，根据《出版管理条例》、《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及相关法律法规，制定本规定。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网络出版服务，适用本规定。  本规定所称网络出版服务，是指通过信息网络向公众提供网络出版物。  本规定所称网络出版物，是指通过信息网络向公众提供的，具有编辑、制作、加工等出版特征的数字化作品，范围主要包括：  （一）文学、艺术、科学等领域内具有知识性、思想性的文字、图片、地图、游戏、动漫、音视频读物等原创数字化作品；  （二）与已出版的图书、报纸、期刊、音像制品、电子出版物等内容相一致的数字化作品；  （三）将上述作品通过选择、编排、汇集等方式形成的网络文献数据库等数字化作品；  （四）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认定的其他类型的数字化作品。  网络出版服务的具体业务分类另行制定。  第三条 从事网络出版服务，应当遵守宪法和有关法律、法规，坚持为人民服务、为社会主义服务的方向，坚持社会主义先进文化的前进方向，弘扬社会主义核心价值观，传播和积累一切有益于提高民族素质、推动经济发展、促进社会进步的思想道德、科学技术和文化知识，满足人民群众日益增长的精神文化需要。  第四条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作为网络出版服务的行业主管部门，负责全国网络出版服务的前置审批和监督管理工作。工业和信息化部作为互联网行业主管部门，依据职责对全国网络出版服务实施相应的监督管理。  地方人民政府各级出版行政主管部门和各省级电信主管部门依据各自职责对本行政区域内网络出版服务及接入服务实施相应的监督管理工作并做好配合工作。  第五条 出版行政主管部门根据已经取得的违法嫌疑证据或者举报，对涉嫌违法从事网络出版服务的行为进行查处时，可以检查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物品和经营场所；对有证据证明是与违法行为有关的物品，可以查封或者扣押。  第六条 国家鼓励图书、音像、电子、报纸、期刊出版单位从事网络出版服务，加快与新媒体的融合发展。  国家鼓励组建网络出版服务行业协会，按照章程，在出版行政主管部门的指导下制定行业自律规范，倡导网络文明，传播健康有益内容，抵制不良有害内容。  第二章 网络出版服务许可  第七条 从事网络出版服务，必须依法经过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取得《网络出版服务许可证》。  第八条 图书、音像、电子、报纸、期刊出版单位从事网络出版服务，应当具备以下条件：  （一）有确定的从事网络出版业务的网站域名、智能终端应用程序等出版平台；  （二）有确定的网络出版服务范围；  （三）有从事网络出版服务所需的必要的技术设备，相关服务器和存储设备必须存放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  第九条 其他单位从事网络出版服务，除第八条所列条件外，还应当具备以下条件：  （一）有确定的、不与其他出版单位相重复的，从事网络出版服务主体的名称及章程；  （二）有符合国家规定的法定代表人和主要负责人，法定代表人必须是在境内长久居住的具有完全行为能力的中国公民，法定代表人和主要负责人至少1人应当具有中级以上出版专业技术人员职业资格；  （三）除法定代表人和主要负责人外，有适应网络出版服务范围需要的8名以上具有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认可的出版及相关专业技术职业资格的专职编辑出版人员，其中具有中级以上职业资格的人员不得少于3名；  （四）有从事网络出版服务所需的内容审校制度；  （五）有固定的工作场所；  （六）法律、行政法规和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规定的其他条件。  第十条 中外合资经营、中外合作经营和外资经营的单位不得从事网络出版服务。  网络出版服务单位与境内中外合资经营、中外合作经营、外资经营企业或境外组织及个人进行网络出版服务业务的项目合作，应当事前报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审批。  第十一条 申请从事网络出版服务，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出版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经审核同意后，报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审批。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60日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  第十二条 从事网络出版服务的申报材料，应该包括下列内容：  （一）《网络出版服务许可证申请表》；  （二）单位章程及资本来源性质证明；  （三）网络出版服务可行性分析报告，包括资金使用、产品规划、技术条件、设备配备、机构设置、人员配备、市场分析、风险评估、版权保护措施等；  （四）法定代表人和主要负责人的简历、住址、身份证明文件;  （五）编辑出版等相关专业技术人员的国家认可的职业资格证明和主要从业经历及培训证明；  （六）工作场所使用证明；  （七）网站域名注册证明、相关服务器存放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承诺。  本规定第八条所列单位从事网络出版服务的，仅提交前款（一）、（六）、（七）项规定的材料。  第十三条 设立网络出版服务单位的申请者应自收到批准决定之日起30日内办理注册登记手续：  （一）持批准文件到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出版行政主管部门领取并填写《网络出版服务许可登记表》；  （二）省、自治区、直辖市出版行政主管部门对《网络出版服务许可登记表》审核无误后，在10日内向申请者发放《网络出版服务许可证》；  （三）《网络出版服务许可登记表》一式三份，由申请者和省、自治区、直辖市出版行政主管部门各存一份，另一份由省、自治区、直辖市出版行政主管部门在15日内报送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备案。  第十四条 《网络出版服务许可证》有效期为5年。有效期届满，需继续从事网络出版服务活动的，应于有效期届满60日前按本规定第十一条的程序提出申请。出版行政主管部门应当在该许可有效期届满前作出是否准予延续的决定。批准的，换发《网络出版服务许可证》。  第十五条 网络出版服务经批准后，申请者应持批准文件、《网络出版服务许可证》到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电信主管部门办理相关手续。  第十六条 网络出版服务单位变更《网络出版服务许可证》许可登记事项、资本结构，合并或者分立，设立分支机构的，应依据本规定第十一条办理审批手续，并应持批准文件到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电信主管部门办理相关手续。  第十七条 网络出版服务单位中止网络出版服务的，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并说明理由和期限；网络出版服务单位中止网络出版服务不得超过180日。  网络出版服务单位终止网络出版服务的，应当自终止网络出版服务之日起30日内，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出版行政主管部门办理注销手续后到省、自治区、直辖市电信主管部门办理相关手续。省、自治区、直辖市出版行政主管部门将相关信息报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备案。  第十八条 网络出版服务单位自登记之日起满180日未开展网络出版服务的，由原登记的出版行政主管部门注销登记，并报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备案。同时，通报相关省、自治区、直辖市电信主管部门。  因不可抗力或者其他正当理由发生上述所列情形的，网络出版服务单位可以向原登记的出版行政主管部门申请延期。  第十九条 网络出版服务单位应当在其网站首页上标明出版行政主管部门核发的《网络出版服务许可证》编号。  互联网相关服务提供者在为网络出版服务单位提供人工干预搜索排名、广告、推广等服务时，应当查验服务对象的《网络出版服务许可证》及业务范围。  第二十条 网络出版服务单位应当按照批准的业务范围从事网络出版服务，不得超出批准的业务范围从事网络出版服务。  第二十一条 网络出版服务单位不得转借、出租、出卖《网络出版服务许可证》或以任何形式转让网络出版服务许可。  网络出版服务单位允许其他网络信息服务提供者以其名义提供网络出版服务，属于前款所称禁止行为。  第二十二条 网络出版服务单位实行特殊管理股制度，具体办法由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另行制定。  第三章 网络出版服务管理  第二十三条 网络出版服务单位实行编辑责任制度，保障网络出版物内容合法。  网络出版服务单位实行出版物内容审核责任制度、责任编辑制度、责任校对制度等管理制度，保障网络出版物出版质量。  在网络上出版其他出版单位已在境内合法出版的作品且不改变原出版物内容的，须在网络出版物的相应页面显著标明原出版单位名称以及书号、刊号、网络出版物号或者网址信息。  第二十四条 网络出版物不得含有以下内容：  （一）反对宪法确定的基本原则的；  （二）危害国家统一、主权和领土完整的；  （三）泄露国家秘密、危害国家安全或者损害国家荣誉和利益的；  （四）煽动民族仇恨、民族歧视，破坏民族团结，或者侵害民族风俗、习惯的；  （五）宣扬邪教、迷信的；  （六）散布谣言，扰乱社会秩序，破坏社会稳定的；  （七）宣扬淫秽、色情、赌博、暴力或者教唆犯罪的；  （八）侮辱或者诽谤他人，侵害他人合法权益的；  （九）危害社会公德或者民族优秀文化传统的；  （十）有法律、行政法规和国家规定禁止的其他内容的。  第二十五条 为保护未成年人合法权益，网络出版物不得含有诱发未成年人模仿违反社会公德和违法犯罪行为的内容，不得含有恐怖、残酷等妨害未成年人身心健康的内容，不得含有披露未成年人个人隐私的内容。  第二十六条 网络出版服务单位出版涉及国家安全、社会安定等方面重大选题的内容，应当按照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有关重大选题备案管理的规定办理备案手续。未经备案的重大选题内容，不得出版。  第二十七条 网络游戏上网出版前，必须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出版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经审核同意后，报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审批。  第二十八条 网络出版物的内容不真实或不公正，致使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合法权益受到侵害的，相关网络出版服务单位应当停止侵权，公开更正，消除影响，并依法承担其他民事责任。  第二十九条 国家对网络出版物实行标识管理，具体办法由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另行制定。  第三十条 网络出版物必须符合国家的有关规定和标准要求，保证出版物质量。  网络出版物使用语言文字，必须符合国家法律规定和有关标准规范。  第三十一条 网络出版服务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或技术标准，配备应用必要的设备和系统，建立健全各项管理制度，保障信息安全、内容合法，并为出版行政主管部门依法履行监督管理职责提供技术支持。  第三十二条 网络出版服务单位在网络上提供境外出版物，应当取得著作权合法授权。其中，出版境外著作权人授权的网络游戏，须按本规定第二十七条办理审批手续。  第三十三条 网络出版服务单位发现其出版的网络出版物含有本规定第二十四条、第二十五条所列内容的，应当立即删除，保存有关记录，并向所在地县级以上出版行政主管部门报告。  第三十四条 网络出版服务单位应记录所出版作品的内容及其时间、网址或者域名，记录应当保存60日，并在国家有关部门依法查询时，予以提供。  第三十五条 网络出版服务单位须遵守国家统计规定，依法向出版行政主管部门报送统计资料。  第四章 监督管理  第三十六条 网络出版服务的监督管理实行属地管理原则。  各地出版行政主管部门应当加强对本行政区域内的网络出版服务单位及其出版活动的日常监督管理，履行下列职责：  （一）对网络出版服务单位进行行业监管，对网络出版服务单位违反本规定的情况进行查处并报告上级出版行政主管部门；  （二）对网络出版服务进行监管，对违反本规定的行为进行查处并报告上级出版行政主管部门；  （三）对网络出版物内容和质量进行监管，定期组织内容审读和质量检查，并将结果向上级出版行政主管部门报告；  （四）对网络出版从业人员进行管理，定期组织岗位、业务培训和考核；  （五）配合上级出版行政主管部门、协调相关部门、指导下级出版行政主管部门开展工作。  第三十七条 出版行政主管部门应当加强监管队伍和机构建设，采取必要的技术手段对网络出版服务进行管理。出版行政主管部门依法履行监督检查等执法职责时，网络出版服务单位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阻挠。  各省、自治区、直辖市出版行政主管部门应当定期将本行政区域内的网络出版服务监督管理情况向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提交书面报告。  第三十八条 网络出版服务单位实行年度核验制度，年度核验每年进行一次。省、自治区、直辖市出版行政主管部门负责对本行政区域内的网络出版服务单位实施年度核验并将有关情况报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备案。年度核验内容包括网络出版服务单位的设立条件、登记项目、出版经营情况、出版质量、遵守法律规范、内部管理情况等。  第三十九条 年度核验按照以下程序进行：  （一）网络出版服务单位提交年度自检报告，内容包括：本年度政策法律执行情况，奖惩情况，网站出版、管理、运营绩效情况，网络出版物目录，对年度核验期内的违法违规行为的整改情况，编辑出版人员培训管理情况等；并填写由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统一印制的《网络出版服务年度核验登记表》，与年度自检报告一并报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出版行政主管部门；  （二）省、自治区、直辖市出版行政主管部门对本行政区域内的网络出版服务单位的设立条件、登记项目、开展业务及执行法规等情况进行全面审核，并在收到网络出版服务单位的年度自检报告和《网络出版服务年度核验登记表》等年度核验材料的45日内完成全面审核查验工作。对符合年度核验要求的网络出版服务单位予以登记，并在其《网络出版服务许可证》上加盖年度核验章；  （三）省、自治区、直辖市出版行政主管部门应于完成全面审核查验工作的15日内将年度核验情况及有关书面材料报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备案。  第四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暂缓年度核验：  （一）正在停业整顿的；  （二）违反出版法规规章，应予处罚的；  （三）未按要求执行出版行政主管部门相关管理规定的；  （四）内部管理混乱，无正当理由未开展实质性网络出版服务活动的；  （五）存在侵犯著作权等其他违法嫌疑需要进一步核查的。  暂缓年度核验的期限由省、自治区、直辖市出版行政主管部门确定，报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备案，最长不得超过180日。暂缓年度核验期间，须停止网络出版服务。  暂缓核验期满，按本规定重新办理年度核验手续。  第四十一条 已经不具备本规定第八条、第九条规定条件的，责令限期改正；逾期仍未改正的，不予通过年度核验，由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撤销《网络出版服务许可证》，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出版行政主管部门注销登记，并通知当地电信主管部门依法处理。  第四十二条 省、自治区、直辖市出版行政主管部门可根据实际情况，对本行政区域内的年度核验事项进行调整，相关情况报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备案。  第四十三条 省、自治区、直辖市出版行政主管部门可以向社会公布年度核验结果。  第四十四条 从事网络出版服务的编辑出版等相关专业技术人员及其负责人应当符合国家关于编辑出版等相关专业技术人员职业资格管理的有关规定。  网络出版服务单位的法定代表人或主要负责人应按照有关规定参加出版行政主管部门组织的岗位培训，并取得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统一印制的《岗位培训合格证书》。未按规定参加岗位培训或培训后未取得《岗位培训合格证书》的，不得继续担任法定代表人或主要负责人。  第五章 保障与奖励  第四十五条　国家制定有关政策，保障、促进网络出版服务业的发展与繁荣。鼓励宣传科学真理、传播先进文化、倡导科学精神、塑造美好心灵、弘扬社会正气等有助于形成先进网络文化的网络出版服务，推动健康文化、优秀文化产品的数字化、网络化传播。  网络出版服务单位依法从事网络出版服务，任何组织和个人不得干扰、阻止和破坏。  第四十六条　国家支持、鼓励下列优秀的、重点的网络出版物的出版：  （一）对阐述、传播宪法确定的基本原则有重大作用的；  （二）对弘扬社会主义核心价值观，进行爱国主义、集体主义、社会主义和民族团结教育以及弘扬社会公德、职业道德、家庭美德、个人品德有重要意义的；  （三）对弘扬民族优秀文化，促进国际文化交流有重大作用的；  （四）具有自主知识产权和优秀文化内涵的；  （五）对推进文化创新，及时反映国内外新的科学文化成果有重大贡献的；  （六）对促进公共文化服务有重大作用的；  （七）专门以未成年人为对象、内容健康的或者其他有利于未成年人健康成长的；  （八）其他具有重要思想价值、科学价值或者文化艺术价值的。  第四十七条 对为发展、繁荣网络出版服务业作出重要贡献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奖励。  第四十八条 国家保护网络出版物著作权人的合法权益。网络出版服务单位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计算机软件保护条例》等著作权法律法规。  第四十九条 对非法干扰、阻止和破坏网络出版物出版的行为，出版行政主管部门及其他有关部门，应当及时采取措施，予以制止。  第六章 法律责任  第五十条 网络出版服务单位违反本规定的，出版行政主管部门可以采取下列行政措施：  （一）下达警示通知书；  （二）通报批评、责令改正；  （三）责令公开检讨；  （四）责令删除违法内容。  警示通知书由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制定统一格式，由出版行政主管部门下达给相关网络出版服务单位。  本条所列的行政措施可以并用。  第五十一条 未经批准，擅自从事网络出版服务，或者擅自上网出版网络游戏（含境外著作权人授权的网络游戏），根据《出版管理条例》第六十一条、《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第十九条的规定，由出版行政主管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法定职权予以取缔，并由所在地省级电信主管部门依据有关部门的通知，按照《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第十九条的规定给予责令关闭网站等处罚；已经触犯刑法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删除全部相关网络出版物，没收违法所得和从事违法出版活动的主要设备、专用工具，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侵犯他人合法权益的，依法承担民事责任。  第五十二条 出版、传播含有本规定第二十四条、第二十五条禁止内容的网络出版物的，根据《出版管理条例》第六十二条、《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第二十条的规定，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删除相关内容并限期改正，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可以处5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限期停业整顿或者由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吊销《网络出版服务许可证》，由电信主管部门依据出版行政主管部门的通知吊销其电信业务经营许可或者责令关闭网站；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为从事本条第一款行为的网络出版服务单位提供人工干预搜索排名、广告、推广等相关服务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其停止提供相关服务。  第五十三条 违反本规定第二十一条的，根据《出版管理条例》第六十六条的规定，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限期停业整顿或者由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吊销《网络出版服务许可证》。  第五十四条 有下列行为之一的，根据《出版管理条例》第六十七条的规定，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责令限期停业整顿或者由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吊销《网络出版服务许可证》：  （一）网络出版服务单位变更《网络出版服务许可证》登记事项、资本结构，超出批准的服务范围从事网络出版服务，合并或者分立，设立分支机构，未依据本规定办理审批手续的；  （二）网络出版服务单位未按规定出版涉及重大选题出版物的；  （三）网络出版服务单位擅自中止网络出版服务超过180日的；  （四）网络出版物质量不符合有关规定和标准的。  第五十五条 违反本规定第三十四条的，根据《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第二十一条的规定，由省级电信主管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或者暂时关闭网站。  第五十六条 网络出版服务单位未依法向出版行政主管部门报送统计资料的，依据《新闻出版统计管理办法》处罚。  第五十七条 网络出版服务单位违反本规定第二章规定，以欺骗或者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许可的，由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撤销其相应许可。  第五十八条 有下列行为之一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予以警告，并处3万元以下罚款：  （一）违反本规定第十条，擅自与境内外中外合资经营、中外合作经营和外资经营的企业进行涉及网络出版服务业务的合作的；  （二）违反本规定第十九条，未标明有关许可信息或者未核验有关网站的《网络出版服务许可证》的；  （三）违反本规定第二十三条，未按规定实行编辑责任制度等管理制度的；  （四）违反本规定第三十一条，未按规定或标准配备应用有关系统、设备或未健全有关管理制度的；  （五）未按本规定要求参加年度核验的；  （六）违反本规定第四十四条，网络出版服务单位的法定代表人或主要负责人未取得《岗位培训合格证书》的；  （七）违反出版行政主管部门关于网络出版其他管理规定的。  第五十九条 网络出版服务单位违反本规定被处以吊销许可证行政处罚的，其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自许可证被吊销之日起10年内不得担任网络出版服务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  从事网络出版服务的编辑出版等相关专业技术人员及其负责人违反本规定，情节严重的，由原发证机关吊销其资格证书。  第七章 附 则  第六十条 本规定所称出版物内容审核责任制度、责任编辑制度、责任校对制度等管理制度，参照《图书质量保障体系》的有关规定执行。  第六十一条 本规定自2016年3月10日起施行。原国家新闻出版总署、信息产业部2002年6月27日颁布的《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同时废止。 |